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 1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6일(월) 오전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 1면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 2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생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교육행정국장의 분장사무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주요사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무를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법령과 교육부 승인사항에 따라 2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

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59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발생 등 교육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9호는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재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통합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적정규모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지역 내 효율적인 학교설립과 기존 학교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지역 중심 인구의 수평이동 등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규모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전담부서 구성을 위한 4급 정원을 승인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전담부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한시기구인바 기존 교육행정국의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명확한 사무분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한시기구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생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설립 및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 책정이 승인되어 법령에 따라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전담부서의 장으로 지방서기관 1명의 정원 책정을 승인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법령과 교육부 승인사항에 따라 2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와 별표3은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검토결과 통보에 따른 한시기구의 부서장(4급)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동하여 함께 개정되는 사항인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생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생환** 이것으로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생환 장인홍 송재형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동욱 박기열 오경환

허기회 강구덕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행정관리담당관	정재헌

○속기사

신선주 김남형